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 - 8호

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2월 26일
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**조 례 명** :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**제정이유**
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영구 설치에 대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3. **주요내용**
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7조)

- 공유재산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영동군의회의 동의 필요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4년 3월 4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　　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**영동군의회**
- 전　　화 : 043)740-3048,　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조례 제 호

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영동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충전시설 보급 확대) ①·②(생 략) <신 설>	제7조(충전시설 보급 확대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영동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